

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. 1. 15. 제천시장
- 회부일 : 2010. 1. 18.
- 상정일 : 2010. 1. 21.(제16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 김동석)

가. 제안이유

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“경비의 지원 등” 조항 신설(제11조)

3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광신)

- 본 조례안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1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.
- 본 개정조례안은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경비의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,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.

- 본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축제추진위원회에 이미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,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이유는?(권건중 위원)

나. 답변요지 <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>

- 행정안전부에서는 2007년 일몰제를 적용 시행하며, 2009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 2010년에는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비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.

※ 일몰제 : 현재의 제규정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

5. 소수의견

“ 없 음 ”

6. 토론요지

“ 없 음 ”

7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